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성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에서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해 필요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수설비의 관리 주체에 대해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 제40조제1항에서는 일부 현장 여건에 의해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를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부합하도록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시의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